

중국의 물류시장 규제철폐 약속 어느정도 이행

중국내 창고·도로분야 개방은 예상외로 진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시 약속했던 물류시장 진입장벽 제한이 당초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가 최근 평가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나서 3년 이상이 지나, 금년 12월에는 만 4년이 되어, 가입시에 중국 정부가 무역이나 물류 등의 분야에서 대외개방을 약속한 사항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예를 들면, 포워딩분야에서는 금년말까지 외자규제를 철폐하기로 약속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는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토대로 “세세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대개 개방공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자유화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중국의 물류시장 개방속도나 세부시행 등에 있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계 물류기업 CEO들은 “도로 수송에서는 지역마다 복잡한 사정도 있고, 외자 단독으로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더구나, 대외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항공부문 라이선스의 문제도 있어, 내년이 되면 완전하게 외자관련 규제가 철폐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운수·물류분야의 시장진입 규제철폐 약속부문에서는, 포워딩이나 도로 수송, 창고업 분야의 개방이 WTO 가입시에 약속한대로 예정대로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데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워딩분야에서는 2002년 12월에 공포된 ‘외상투자 국제화물수송 대리기업 관리규정’에 의해 외자의 출자가 50% 이하로 제한되고 있었지만 75%까지 인정되게 되었다.

WTO 가입시의 개방스케줄은 가입 후 1년 이내에 외자 과반수를, 4년 이내에 외자 100%를 각각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현시점에서 개방약속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어 가입 4년차가 되는 2005년 12월11일까지 외자계에의 자본규제가 완전하게 철폐될 전망이다.

도로수송 분야에서는 2004년 12월에 ‘외국투자 도로수송업 관리규정’ 보충 규정 2를 공함으로써 포워딩 분야보다 앞서 외자 100%에 의한 도로수송 기업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창고사업에서도 외자 100%가 인정되는 등 창고·도로분야의 개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WTO 가입시 공약대로 대외개방이 진행되고 있으나, 외자 단독으로 나서기 어려운 부분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도로수송업 면허는 중앙의 교통부로부터 취득하지만, 실제로 영업하거나 화주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역에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더구나 각 지역별로 영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이 가지각색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A지역에서는 도로수송업의 영업허가를 취하기 위해 자사 보유의 트럭은 5대 이상 보유해야 하며, 동시에 운전기사 10명 이상의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